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351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5. 28.
- 회 부 일 : 2021. 5. 28.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2021. 1.12. 전부 개정되어 2022. 1.1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연령과 주민감사 청구인수가 하향 조정되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청구대상 기준 연령 및 청구인수 (조례)

구분	청구대상 기준 연령	청구인수
기존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 200명 미만
변경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現「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 및 개정「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다. 공 고 : 2021. 5. 27. ~ 2021. 6. 16

5. 검토의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완화하였고,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주민주권이 구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現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개정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